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
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교육위원회 김용석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-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장의 도시공원, 학교정화구역,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중 보행 산책로 등은 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’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이 아니라, ‘하천법’의 적용을 받고 있어,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.

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보행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,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